



금융감독원

# 보도자료



손해보험협회  
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

보도	2023.1.19.(목) 조간	배포	2023.1.18.(수)		
담당 부서	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	책임자	국 장	문형진	(02-3145-7460)
		담당자	팀 장	최진영	(02-3145-7471)
	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	책임자	상 무	서영종	(02-3702-8580)
		담당자	부 장	백승욱	(02-3702-8590)

##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합니다.

-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-

◆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**보험상품 관련 꿀팁**을 안내할 계획입니다.

- 이에 「**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**」 첫 번째 시리즈로 전 국민 생활필수품인 **자동차보험**과 관련하여, **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**을 안내합니다.

< 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 주요 내용 >

### ① 교대운전에 대비,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세요

▶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운전할 경우 「**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**」에 가입 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「**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**」 가입 여부를 확인

### ② 렌터카 이용시 보험회사의 특약 상품을 활용하세요

▶ 렌터카 업체의 「차량손해 면책 서비스」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「**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**」 가입

### ③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벼운 차량 고장을 해결하세요

▶ 배터리 방전,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시 「**긴급출동 서비스 특약**」 활용

### ④ 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하여 교환수리 하세요

▶ 자동차 사고로 **긁히고 찍힌 경미손상** 발생시,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**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**

### ⑤ 자동차 사고 발생시 이렇게 처리하세요

▶ 장거리 운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사고 단계별 「**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**」에 따라 대처

◆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**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시 보험상품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「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**」을 주기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

## 1 교대운전에 대비,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세요

◆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해 '단기(임시) 운전자 확대 특약'에 가입하시면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### 1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 대비하세요

-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\*한 경우라도 「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」에 가입하면,

\* 자동차보험 가입시 통상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가능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음

- 다른 사람(친척 또는 제3자)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.

### 2 자동차 운전자라면 「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」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

-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「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」에 가입\*한 경우라면

\* 「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」 가입시(가입률 약 83% 수준) 「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」에 자동으로 가입되는데,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

-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\*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\*\*이 가능합니다.

\*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(승용차 ↔ 승용차, 일부 소형승합, 1톤 이하 화물자동차)으로 본인 또는 가족(부모, 배우자, 자녀)이 소유(사용)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

\*\* 대인Ⅱ(대인Ⅰ은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에 의해 차주의 보험에서 보상), 대물배상, 자기신체사고



다만, 보험회사에 따라 '단기(임시) 운전자' 및 '다른 자동차' 범위 제한 등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,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## 2

## 렌터카 이용시 보험회사의 특약 상품을 활용하세요

◆ 명절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'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'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.

□ 소비자는 렌터카 파손에 대비하여 렌터카 업체의 「차량손해 면책」 서비스\*에 가입할 수 있으나,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

\* 자차 사고시 수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렌터카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나,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는 일정한 면책금(5~30만원 수준)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하는 제도

□ 따라서, 명절 연휴 기간 중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하여 「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」을 가입하는 것이 유용합니다.

○ 동 특약 가입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※ <예시>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와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 비교\*

\* (가정) 쏘나타 1일 대여, 차량손해 면책금 5만원 선택시

☞ 1일 비용 :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(2만 2천원) >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(7천 600원)



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\*과 가입조건,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,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도중에는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장범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\*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,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

### 3

##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벼운 차량 고장을 해결하세요

◆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시 '긴급출동 서비스 특약'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

□ 설 연휴에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, 타이어 펑크,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아래와 같은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.

- ①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'긴급출동 서비스'를 이용  
(☞ 출발 전에 「긴급출동 서비스 특약」 가입 여부 확인 필요)
- ②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\*(☎ 1588-2504)를 이용

\*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(휴게소, 영업소, 졸음쉼터 등)까지 무료로 견인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

###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주요 내용(예시)

서비스명	내용
긴급견인	- 자동차운행중 고장 및 사고로 운행 불가시 가까운 정비업체 까지 견인(통상 10Km 까지 무상견인, 초과시 실비 부담)
비상급유	- 도로주행 중 연료소진시 비상급유(통상 3L 급유), 전기차의 경우 가까운 충전소로 견인 서비스 제공
배터리 충전	-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할 경우 출동하여 운행 가능 토록 조치(배터리 교체시 실비 부담)
타이어 펑크 수리·교체	- 타이어 펑크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펑크 수리 또는 교체 조치(예비타이어가 없어 타이어 교환시 실비 부담)
잠금장치 해제	- 열쇠를 차안에 두고 문을 잠그거나 분실한 경우 잠금장치 해제조치
긴급구난	-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과의 충격으로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(별도 구난장비가 필요 하거나 구난시간이 30분 초과시 실비 부담)

※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(자정)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상기 단기 운전자 확대,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, 렌터카 손해 담보,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은 출발 전날까지(~24시)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.

4

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하여 교환수리 하세요

◆ 자동차 사고로 **굵히고 찌힌 경미손상(제3유형)** 발생시,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**새 품질인증부품**으로 **교환수리**가 가능합니다.

□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사고시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\*한 바 있습니다.(☞ '23.1.1.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)

\* 종전 수리기준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경미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, 굵히고 찌힌 경미손상(제3유형)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 대신 신제품으로 교환수리를 요구하여 수리비 갈등이 발생

○ 이에 차량에 **굵히고 찌힌 경미손상(제3유형)** 발생시,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**새 품질인증부품**으로 **교환수리**할 수 있습니다.

(참고) 경미손상 수리기준 개요

- (경미손상 정의)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
- (대상 부품)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①범퍼, ②후드, ③앞펜더, 도어(④앞, ⑤뒤, ⑥후면), ⑦뒤펜더, ⑧트렁크 리드 등 8개 외장부품
- (경미손상 유형) 성능·충돌실험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충격 흡수에 이상 없는 3가지 경미손상 유형(①코팅손상, ②색상손상, ③굵힘·찌힘)을 선정

유형 ① : 코팅 손상	유형 ② : 색상 손상	유형 ③ : 굵힘·찌힘
		
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 (도장막 손상없음)	투명 코팅막과 도장막(색상)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	굵힘, 찌힘 등으로 외장부품 소재 일부 손상 (꺼임 패임 등 없음)

☀ 경미손상 중 굵히고 찌힌 경미손상(제3유형)에 대해서만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가 시행됨에 따라, 만약 차량모델에 맞는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만 가능합니다.

## 5 자동차 사고 발생시 이렇게 처리하세요

◆ 장거리 운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'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'에 따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.

1 (경찰 사고접수) 설 연휴 기간 중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,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- 인사 사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.

2 (보험사 사고접수) 출발 전에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 번호를 확인해 두고, 사고 발생시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합니다.

3 (사고현장 보존)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며, 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\*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\* 차량 파손 부위 등을 근접하여 촬영하는 것과 함께 동영상 촬영 등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사고 정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것도 필요

- 또한,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.

 상기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
 특히, 사고 발생시 분위기에 압도되어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,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.

☞ 「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」 상세는 <붙임> 참조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**1 경찰에 사고발생 사실 신고**

-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음
- 특히,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통하여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블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인명사고시 신고를 하지 않다가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

**2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접수**

-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 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함
- 보험사 직원은 사고처리 전문가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할 수 있고, 견인 및 수리시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음
-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점에 유의

**3 사고현장의 보존 및 증인확보**

-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,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의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
-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, 주소, 전화번호도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음
-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, 증거 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,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

**4 2차 사고 주의**

- 우선적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,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위의 증거 확보 등을 확실히 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킴
- 만약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,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 차량 표식을 설치하고,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 신호 등을 설치

**참고****보험회사별 연락처**

보험회사	연락처(콜센터 번호)
메리츠화재해상보험	1566-7711
한화손해보험	1566-8000
롯데손해보험	1588-3344
MG손해보험	1588-5959
흥국화재해상보험	1688-1688
삼성화재해상보험	1588-5114
현대해상화재보험	1588-5656
KB손해보험	1544-0114
DB손해보험	1588-0100
AXA손해보험	1566-1566
하나손해보험	1566-3000
캐롯손해보험	1566-0300